

##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연계방안 연구 - 중대산업재해 중심

## A Study on the Link between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nd the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Focused on the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이병림<sup>1</sup> · 김상덕<sup>2</sup> · 최재욱<sup>3\*</sup>Byoung-Lim Lee<sup>1</sup>, Sang-Duk Kim<sup>2</sup>, Jae-Wook Choi<sup>3\*</sup><sup>1</sup>Graduate Student, Division of Architectural and Fire Protection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Republic of Korea<sup>2</sup>CEO, Safety Co., Ltd., Seoul, Republic of Korea<sup>3</sup>Professor, Department of Fire Protection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Jae-Wook Choi, jwchoi@pknu.ac.kr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s intended to confirm the business disruptive risk in the Serious Accidents, and propose a plan to comply with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hrough the Disaster Mitigation Activity Management System. **Metho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ies, the requirement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he Disaster Mitigation Activity Management System, and ISO 45001 were compared and analyzed, and implications were derived. **Result:** The business disruption and financial adverse effects caused by industrial accidents were identified. Based on this and by using the Disaster Mitigation Activity Management System, measures to link the documentation requirements of the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o the Disaster Mitigation Activity Management System, and to manage the implementation record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s duty were derived. **Conclusion:** When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Disaster Mitigation Activity Management System, it can not only comply with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but also contribute to maintaining business continuity and ESG management through the prevention of various disasters and the minimization of secondary damage, etc.

**Keywords:**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Disaster Mitigation Activity Management System,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Business Disruptive Risk, Continuity, ESG

## 요약

**연구목적:** 중대재해의 업무중단 리스크를 확인하고,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활용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ISO 45001 각각의 요구사항과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중단 및 재무적 악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서화 요구사항을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와 연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구축·운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 예방 및 2차 피해 최소화 등을 통하여 업무연속성 유지와 ESG 경영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핵심용어:** 중대재해처벌법,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중대산업재해, 업무중단 리스크, 연속성, ESG

Received | 5 September, 2022

Revised | 26 September, 2022

Accepted | 28 September, 2022

OPEN ACCES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 서론

### 연구배경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동법” 병기)으로 인한 사회적 기대와 우려가 서로 교차하고 있다.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영국·호주·캐나다 등의 사례를 들며 기업 처벌강화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효과가 불확실하며 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과 법 개정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Kim, 2021; Jung, 2022).

반면 기업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동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은 물론 학계의 연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처벌이 강화된 만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증빙으로서 문서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Oh, 2022). 이를 뒷받침 하듯 동법과 ISO 45001의 요구사항 문서화 연계 및 의무이행 연계 대책(Woo, 2022), 동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정착방안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효율적 운영방안(Song et al., 2022)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연계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의 종합적 안전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안전보건 활동이 안전보건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 연구(Kim et al., 2022) 등 업종별 대응방안 연구와 동법의 제정 공포로 인하여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산업에서는 ESG 경영항목 중 S(Social) 분야 성과가, 유해 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재해 위험이 높은 산업에서는 E(Environment) 분야 성과가 각각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기업의 재무적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결과도 있다(Kim et al., 2021).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학계의 연구는 사전 예방대책이 대부분이며, 중대재해 발생 이후 기업 운영상의 리스크 관리나 그로 인한 피해를 경감시키려는 노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사고로부터 인명안전을 확보하는 예방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및 추가 손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Kim, 2021)과 사고가 우연의 법칙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 예방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활동도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각각의 활동 결과가 중대재해 근절에 선순환적(善循環的)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연구목적 및 방법

이에 본 논문은 중대재해의 잠재적 업무중단 리스크를 확인하고, 재난 및 중단성 사고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활동에 있어 PDCA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문서화된 관리체계를 규정하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이하 “동 체계” 병기)를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를 가진다. 첫째, 이론적 배경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요구사항을 살펴본 후 동 체계와 ISO 45001:2018을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문헌연구와 자료조사를 통하여 중대재해의 업무중단 리스크를 확인하고, 동 체계를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의 문서화 연계대책과 의무 이행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향후과제 등을 제안하였다.

## 이론적 배경

### 중대재해처벌법

동법은 안전보건 조치 강화는 물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해야 할 고유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안전관리 책임과 처벌의 중심을 현장에서 최고경영자로 이동시키는 계기가 되었다(Kwon, 2021; Oh, 2021). 기업에서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확보의무(Table 1)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Table 1.** Definition of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duty to secure safety and health und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mposed on business owner, etc.

구분	내용	비고
중대 산업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li> <li>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li> <li>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li> </ul>	
안전보건 확보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lt;법 제4조 제1항 제1호, 영 제4조&gt;</li> </ul>	
	- (1호)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 (2호)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 (3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절차가 이행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필요조치	㉢
	- (4호)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제3호의 유해위험요인 개선 예산 등의 편성·집행	㉣
	- (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권한·예산 부여 및 수행 평가기준 마련,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
	- (6호)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배치, 결직시 정해진 업무 수행시간 보장	㉦
	- (7호)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개선방안 이행여부 점검, 필요조치	㉧
	- (8호) 중대산업재해 발생(위험) 대비 대응·구호·피해방지 조치 매뉴얼 마련, 반기 1회 이상 조치여부 점검	㉨
	- (9호) 도급·용역·위탁 등 수급자 안전보건 확보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이행 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lt;법 제4조 제1항 제2호&gt;</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 명한 사항 이행 조치 &lt;법 제4조 제1항 제3호&gt;</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lt;법 제4조 제1항 제4호, 영 제5조 제2항&gt;</li> </ul>	
- (1호) 의무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직접 未점검시 지체없이(이하 ‘곧’) 점검결과 보고 받을 것	㉬	
- (2호)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의무 未이행시 인력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필요조치	㉭	
- (3호) 유해위험작업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직접 未점검시 곧 결과 보고 받을 것	㉮	
- (4호) 제3호에 따른 보고 결과 未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 지시, 예산확보 등 필요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 未발생토록 동법 제4조의 조치 &lt;법 제5조&gt;</li> </ul>	㉰	

자료 :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

###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요구사항

기업재난관리표준(이하 “동 표준” 병기)에서 규정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조항별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와 ISO 45001:2018 요구사항 비교

ISO 45001:2018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연계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Woo, 2022), 동 체계와 ISO 45001을 비교·분석하여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연계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Table 3은 경영시스템의 이론적 통합구축에 대한 선행연구(Jung, 2021)와 유사한 방법으로 두 표준의 조항별 요구사항을 비교 분석한 결과로, 동 체계의 3.4.4(전담조직 요구), 5.2(업무영향분석), 5.4(사업연속성 전략수립; 5.4.3 제외) 등의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대부분 상호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 체계는 5.5.3(사업연속성 확보계획), 5.5.4(복구계획), 6절(교육 및 훈련) 등과 같이 재난(또는 업무중단 사고)의 대비, 대응 및 복구 활동에 특화된 체계인 반면 ISO 45001:2018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참여와 협의(5.4; 동 체계에는 없음)를 강조하고, 사건(상해 및 건강상 장애가 발생하는 사고 등)을 대응이 아닌 부적합·개선 대상으로 규정(10.2)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특화된 체계인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Table 2.** Requirements of the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조 항		주요 내용
1절 개요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절차 규정(1.1), PDCA 적용(1.2),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및 업무 중단사고에 적용(1.3), 참고규범과 방향을 같이 함(1.5).
1.1 정의	1.5 참고규범	
1.2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모델/구성체계	ISO 22301:2012, BS 25999-1:2006, NFPA 1600:2010, SS 540:2008 등	
1.3 적용범위	1.4 다른 규정과의 관계	
2절 용어의 정의		용어설명 (재난관리 각 활동 정의 없음)
3절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기획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기획을 위해 기업 경영현황 분석과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하고 대처(3.1, 3.2), 범위설정(3.2), 정책수립과 목표·계획 수립 확인 및 재해경감활동 조직체계 구성 등 기업 최고관리자와 경영진의 역할, 전담조직 역할(3.4), 동 체계 운영 필요자원, 참여인력의 적격성 및 인지 의무 등 운영지원(3.5) 등에 관한 사항
3.1 기업 경영현황 이해	3.4.2 정책	
3.1.1 기업 경영현황 분석	3.4.3 최고관리자 역할/책임/권한	
3.1.2 이해관계자 및 법적/제도적 요구사항	3.4.4 재해경감활동 조직체계구성	
3.1.3 리스크와 기회 식별	3.5 운영지원	
3.2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범위설정	3.5.1 자원	
3.3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3.5.2 수행능력	
3.4 리더십	3.5.3 인지	
3.4.1 최고관리자책무	3.5.4 의사소통	
	3.5.5 문서화된 정보	
4절. 목표달성계획 수립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목표 및 목표 달성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1 목표설정	4.2 목표달성 계획	
5절 운영 및 실행		재해경감활동 프로세스 결정·이행, 아웃소싱에 따른 활동 제어(5.1), 업무영향분석을 통한 복구목표시간 설정 및 공급업체 필요자원 식별(5.2), 리스크 평가를 통한 업무와 협력업체 지원자원의 중단성 리스크 평가(5.3), 사업연속성 전략 수립(5.4), 재해경감활동 절차 수립 및 실행(5.5) 등에 관한 사항
5.1 운영계획 및 통제관리	5.4.4 2차 피해방지	
5.2 업무영향분석	5.4.5 재무관리	
5.3 리스크 평가	5.5 재해경감활동 절차 및 계획 수립·실행	
5.4 사업연속성 전략 수립	5.5.1 재난(사고)대응체계	
5.4.1 전략 결정/선택	5.5.2 경보/의사소통	
5.4.2 소요자원 파악	5.5.3 대응 및 사업연속성확보계획	
5.4.3 경감계획	5.5.4 복구계획	
6절 교육 및 훈련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6.1), 연습 및 훈련 평가(6.2)에 관한 사항
6.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2 연습 및 훈련 평가	
	6.2.1 연습 및 시험	
7절 수행평가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적합성·효율성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7.3 내부감사	
7.2 재해경감활동 평가	7.4 경영진 검토	
8절 개선		평가, 감사 및 검토를 통한 시정사항 식별 및 지속적인 개선에 관한 사항
8.1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8.2 지속적 개선	

자료 : 기업재난관리표준(행정안전부)

**Table 3.** Link between each requirement of the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and ISO 45001:2018

기업재난관리표준(“동 표준” 병기)	ISO 45001:2018(“45001” 병기)	비교분석 결과
3.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기획 3.1 기업 경영현황 이해 3.1.1 기업 경영현황 분석 3.1.2 이해관계자 및 법적, 제도적 요구사항 3.1.3 리스크와 기회의 식별 3.2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범위설정 3.3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3.4 리더십 3.4.1 최고관리자책무 3.4.2 정책 3.4.3 최고관리자 역할/책임/권한 3.4.4 재해경감활동 조직체계구성 3.5 운영지원 3.5.1 자원 3.5.2 수행능력 3.5.3 인지 3.5.4 의사소통 3.5.5 문서화된 정보	4. 조직 상황 4.1 조직과 조직 상황의 이해 4.2 이해관계자 니즈·기대, 6.1.3 법적 요구 6.1 리스크/기회를 다루는 조치(6.1.1, 6.1.4) 4.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적용범위 결정 4.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5.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5.1 리더십과 의지표명 5.2 안전보건방침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5.4 근로자 협의 및 참여 7. 지원 7.1 자원 7.2 역량/적격성 7.3 인식 7.4 의사소통 7.5 문서화된 정보	1. 동 표준 3절은 45001의 4/5/7과 연계. 단, 3.1.2와 3.1.3은 45001의 4.2/6.1.3, 6.1.1/6.1.4와 각각 연계됨. 2. 동 표준 3.4.4는 재해경감활동 조직체계 구성과 전담조직 및 이사회/경영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45001과 직접 연계되지 않음. 3. 45001의 5.4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활동에 근로자 협의와 참여를 강조하며, 동 표준과 연계조항 없음. 4. 동 표준은 지원활동이 Plan (3.5) 단계이나, 45001은 Do (7) 단계임.
4. 목표달성계획 수립 4.1 목표설정 4.2 목표달성 계획 5. 운영 및 실행 5.1 운영계획 및 통제관리 5.2 업무영향분석 5.3 리스크 평가 5.4 사업연속성 전략 수립 5.4.1 전략 결정/선택 5.4.2 소요자원 파악 5.4.3 경감계획 5.4.4 2차 피해방지 5.4.5 재무관리 5.5 재해경감활동 절차 및 계획 수립, 실행 5.5.1 재난(사고)대응체계 5.5.2 경보/의사소통 5.5.3 대응/사업연속성확보계획 5.5.4 복구계획	6. 기획 6.2 안전보건 목표와 목표 달성 기획 6.2 안전보건 목표와 목표 달성 기획 8. 운용 8.1 운용 기획 및 관리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6.1.2) 8.1.2 위험요인 제거 및 안전보건 리스크 감소 8.2 비상시 대비 및 대응 8.2 비상시 대비 및 대응 a) 8.2 비상시 대비 및 대응 e, f) 8.2 비상시 대비 및 대응 a)	5. 동 표준 4절은 45001의 6.2와 연계. 45001의 6.1은 동 표준 3.1.2~3/5.3과 연계됨. 6. 동 표준 5절은 45001의 8과 연계. 단, 5.3은 45001의 6.1.2와 연계됨. 7. 동 표준 5.5, 6절은 모두 45001의 8.2와 연계될 정도로 사업연속성 확보(5.5.3) 및 복구(5.5.4) 등 비상대비 및 대응 활동에 특화된 체계임. 8. 동 표준 5.4(5.4.3 제외)는 45001과 직접 연계되지 않음.
6. 교육 및 훈련 6.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2 연습 및 훈련 평가 6.2.1 연습 및 시험 7. 수행평가 7.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7.2 재해경감활동 평가 7.3 내부감사 7.4 경영진 검토 8. 개선 8.1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8.2 지속적 개선	8.2 비상시 대비 및 대응 b) 8.2 비상시 대비 및 대응 c) 9. 성과 평가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성과평가 8.2 비상시 대비 및 대응 d) 9.2 내부심사 9.3 경영 검토 10. 개선 10.1 일반사항 10.2 사건, 부적합 및 시정조치 10.3 지속적 개선	9. 동 표준 6절은 모두 45001의 8.2 b), c)와 연계됨. 10. 동 표준 7절은 45001의 9와 연계. 단, 7.2는 45001의 8.2 d)와 연계됨 11. 동 표준 8절은 45001의 10과 모두 연계됨

자료 : 기업재난관리표준(행정안전부), ISO 45001:2018

또한 Table 4와 같이 동 체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경영시스템 기본 구조인 HLS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ISO 45001과 같은 PDCA 모델이 적용되어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수립·실행·운영·감시·검토·유지관리 및 지속적 개선에 있어 다른 경영시스템 표준과 일관성이 있으므로(Park et al., 2018) 조항별 비교가 용이하였다. 동 체계에 HLS 구조가 적용될 경우 ISO 45001 등 타 경영시스템과 통합된 실행 및 운영이 더욱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Comparison between the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and ISO 45001:2018

구분	기업재난관리표준	ISO 45001:2018
규격 성격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국내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
목적	재난(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를 통한 조직 회복력 제공	근로자 상해·건강장해 방지, 안전·건강한 작업장 제공
관리 대상	재난 및 업무중단 사고	작업장 상태/작업자 행동
규격 구조	Plan(계획)-Do(실행)-Check(평가)-Act(개선) Cycle	P-D-C-A Cycle
문서 구조	High Level Structure(HLS) 미적용	HLS 적용

자료 : 기업재난관리표준(행정안전부), ISO 45001:2018

##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와 중대재해처벌법 연계방안

###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와 중대재해처벌법 연계 조건 검토

기업이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중대산업재해(Table 1)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리스크 평가(5.3)를 통하여 업무중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 경영현황분석(3.1.1) 시 수행되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목적 정의에 중대산업재해 예방 등의 안전보건 활동이 포함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법적 요구사항으로 식별(3.1.2)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이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에 필요한 자원으로 결정(3.5.1) 될 수 있다.

최근의 사회현상에서 산업재해의 리스크 요인들을 살펴보면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작업중지 해제조건이 강화되었고,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서 평균 40.5일간의 작업중지(고용노동부 발표, 2022.03.10)가 있었다. 그리고 “기업의 사망사고재해를 증가시 영업이익액 감소, 중대재해처벌법 공포시점에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산업에서 안전 성과가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등”의 실증적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므로, 이제 기업에서는 산업재해를 업무중단 또는 재무적 악영향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인식하여(Han, 2022), 동 체계와 연계 등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피해경감 등 사후관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활용한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 문서화 연계 방안

기록관리는 조직의 경영품질을 반영하며, 해당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과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중요한 요소이다.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에서는 요구사항의 이행결과를 기록하거나, 문서화된 절차나 정보를 유지 또는 보유(이후 “문서화”로 통칭)하

1) 2011~2018년까지 KOSPI·KOSDAQ 상장 총 586개 제조기업 대상 연구에서 사망사고재해율 1% 증가시 1인당 영업이익액은 조사대상 기업 평균 대비 약 18.7~26.4%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Park, 2019),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시점에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를 통해 ESG 평가정보가 제공되는 90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산업에서 안전(S) 성과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21).

여야 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은 업무절차, 매뉴얼, 기준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Table 5와 같이 동 체계와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의 문서화 연계대책을 제시하였다. Table 5의 ‘문서화’란의 내용은 동 체계의 문서화 요구, 행정안전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대행과정’ 교재 내용<sup>(\*)</sup> 표시) 및 동 체계 3.5.5에 따라 기업의 필요로 결정할 수 있는 문서화 예시<sup>(\*\*)</sup> 표시) 등 3가지를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만일, ‘문서화’란의 내용과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이 연계되지 않더라도 동 체계 3.5.5에 따라 필요시 추가 가능하므로 연계하는데 문제가 없다.

**Table 5.** Measures to link document to the requirement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using the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기업재난관리표준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	문서화	조항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요구사항
<b>3.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기획</b>			
3.1 기업 경영현황 이해			
3.1.1 기업 경영현황 분석	현황 분석서		
3.1.2 이해관계자·법적·제도적 요구사항 이해관계자 등 요구			
3.1.3 리스크와 기회의 식별	리스크평가 보고서 <sup>(*)</sup>	영 4조 3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반기 1회 업무절차 이행 점검 후 필요조치
		영 4조 7호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반기 1회 개선방안 이행여부 점검·조치
3.2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범위설정	적용범위		
3.3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3.4 리더십			
3.4.1 최고관리자의 책무			
3.4.2 정책	정책서	영 4조 1호	안전보건 방침설정
3.4.3 최고관리자의 역할, 책임 및 권한	안전보건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sup>(**)</sup>	영 4조 5호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업무 권한 부여
3.4.4 재해경감활동 조직체계 구성		영 4조 2호	안전보건 총괄·관리 전담 조직 설치
3.5 운영지원			
3.5.1 자원	안전보건 예산·인력 배치 계획 및 실적 <sup>(**)</sup>	영 4조 4호	안전보건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 예산 등 편성
		영 4조 5호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업무 예산 부여
		영 4조 6호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배치, 겸직시 수행시간 보장
3.5.2 수행능력	적격성 확보 활동 증거물	영 4조 5호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3.5.3 인지			
3.5.4 의사소통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정보수신	영 4조 7호	종사자 안전보건 의견청취 절차 마련,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조치
		법 4조, 5조	안전보건 확보의무 관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과 의사소통 프로세스 수립, 실행 및 유지
3.5.5 문서화된 정보	동 표준의 요구 또는 기업 필요로 결정한 문서화된 정보관리	법 4조, 5조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결과 문서화

**Table 5.** Measures to link document to the requirement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using the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Continue)

기업재난관리표준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	문서화	조항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요구사항
<b>4. 목표달성계획 수립</b>			
4.1 목표설정	목표설정 자료 <sup>(*)</sup>	영 4조 1호	안전보건 목표 설정
4.2 목표달성 계획			
<b>5. 운영 및 실행</b>			
5.1 운영계획 및 통제관리	계획에 따라 수행된 프로세스 설명자료	영 4조 9호 법 5조	도급·용역·위탁 수급자 안전보건 확보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반기 1회 이행점검 도급·용역·위탁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
5.2 업무영향분석	업무영향평가 절차, 분석 보고서 <sup>(*)</sup>	영 4조 9호 나/다	도급·용역·위탁 수급자 안전보건관리비 기준, 건설업·조선업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 기준
5.3 리스크 평가	리스크평가 절차 리스크평가 보고서 <sup>(*)</sup>	영 4조 3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반기 1회 업무절차 이행 점검 후 필요조치
5.4 사업연속성 전략 수립			
5.4.1 전략결정 및 선택	공급업체 능력 평가 결과 <sup>(*)</sup>	영 4조 9호 가	도급·용역·위탁 수급자 산재예방 능력과 기술 평가 기준·절차
5.4.2 소요자원 파악	분야별(조직, 인력, 대체사업장, IT 등) 전략수립 보고서 <sup>(*)</sup>	영 4조 4호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예산 편성, 제3호의 유해위험요인 개선 예산 편성 등
		영 4조 5호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업무 예산 부여
		영 4조 6호	안전/보건 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배치, 겸직시 수행시간 보장
5.4.3 경감계획			
5.4.4 2차 피해방지			
5.4.5 재무관리	재무계획 및 집행절차	영 4조 4호 영 4조 5호 가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예산 편성, 제3호의 유해위험요인 개선 예산 편성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업무 예산 부여
5.5 재해경감활동 절차/계획 수립, 실행			
5.5.1 재난(사고)대응체계	재난(사고) 대응 절차와 관리체계, 대응관련 이해관계자 관리 및 의사소통	영 4조 8호	중대산업재해 발생(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 반기 1회 조치여부 점검
		영 4조 8호 가	가. 작업중지, 대피, 위험제거 등 대응조치
		영 4조 8호 나 영 4조 8호 다	나. 중대산업재해자 구호조치 다. 추가피해방지 조치
5.5.2 정보 및 의사소통	정보/의사소통 절차		
5.5.3 대응 및 사업연속성확보계획	재난(사고) 대응 및 활동재개/복구 절차		
5.5.4 복구계획	복구계획		
<b>6. 교육 및 훈련</b>			
6.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 프로그램		
6.2 연습 및 훈련 평가			
6.2.1 연습 및 시험			



**Table 5.** Measures to link document to the requirement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using the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Continue)

기업재난관리표준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	문서화	조항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요구사항
<b>7. 수행평가</b>			
7.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결과, 부적합 조치사항	영 5조 2항 1호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 점검, 직접 未점검시 그 결과 즉시 보고받을 것
		영 5조 2항 3호	반기1회 이상 유해위험작업 안전보건 교육여부 점검, 직접 未점검시 그 결과 즉시 보고받을 것
7.2 재해경감활동 평가	사후 검토결과		
7.3 내부감사	내부감사 결과		
7.4 경영진 검토	경영진 검토결과	법 4조, 5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계획된 주기로 동법 준수체계를 검토하고, 필요조치 결정
		영 5조 2항 1호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 점검, 직접 未점검시 점검결과 즉시 보고받을 것
		영 5조 2항 3호	유해위험작업 안전보건 교육 여부 반기1회 이상 점검, 직접 未점검시 점검결과 즉시 보고받을 것
<b>8. 개선</b>			
8.1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부적합 및 시정조치 결과보고(※)	법 4조 1항 2호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조치
		법 4조 1항 3호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개선명령 이행 조치
		영 5조 2항 2호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未이행시 인력배치/예산추가편성 등 조치
		영 5조 2항 4호	未실시 유해위험작업 안전보건 교육 이행지시, 예산확보 등 조치
8.2 지속적 개선			

자료 :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 기업재난관리표준(행정안전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대행과정( I 권 96페이지, 행정안전부)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활용한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 이행 기록관리 방안**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시 의무이행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평상시 이행 결과를 기록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내부심사 등을 통해 이행실적과 보관기간 등의 적절성을 재확인하는 시스템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조항별 요구사항 이행 결과가 동법 및 동법 시행령과 연계되도록 안전보건 확보의무(Table 1) 이행 조치에 대한 기록 관리방안을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요구사항에서 분석 정리하여 Table 6과 같이 제시하였다. 제시된 자료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으므로, 동 체계를 활용하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Table 6.** Measures to document the implementation of the requirement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using the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요구사항 <sup>2)</sup>	이행 조치에 대한 기록 관리방안
㉑ 안전보건 목표·방침	최고관리자의 책무(3.4.1)에 따라 안전보건방침을 설정(3.4.2)하고 목표와 안전보건활동 세부추진 계획이 수립(4절)됨을 확인해야 한다. 핵심성과지표(KPI)에 안전보건 항목을 포함하여 모니터링·측정·분석·평가(7.1) 등을 통해 달성여부를 기록, 관리한다.
㉒ 안전보건 전담조직	전담조직을 설치(3.4.4)하고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에 기재한다.
㉓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이행점검	사업장 안전보건 유해·위험요인 식별(3.1.3), 위험성평가 및 개선(5.3, 5.4.3)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반기 1회 이상 확인·개선이 이뤄지는지 점검한 실적을 기록, 관리한다.
㉔ 재해예방, 유해·위험 개선 등 예산 편성·집행	소요예산을 파악(5.4.2) 한 뒤 재무계획 및 예산집행 절차를 수립(5.4.5)하고 집행실적을 기록, 관리한다.
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예산, 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3.4.3)과 예산(3.5.1, 5.4.2)을 주고, 수행평가기준을 마련(3.5.2)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한다.
㉖ 안전관리자등 배치, 겸직 시 업무시간 보장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 등 필요인력(3.5.1, 5.4.2)을 배치하고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한다.
㉗ 종사자 의견취취 절차, 개선방안 이행점검, 필요조치	종사자의 안전·보건 의견취취 절차(3.5.4)를 마련한 뒤 절차에 따른 리스크와 기회 식별(3.1.3) 및 개선(5.3, 5.4.3) 내용을 반기 1회 이상 검토한 후 조치한 실적을 기록, 관리한다.
㉘ 중대산업재해 조치 매뉴얼 마련, 매뉴얼 조치여부 점검	중대산업재해 등 사고발생 또는 발생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근로자대피·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피해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의 시나리오와 절차를 마련(5.5.1)하고 연습과 훈련 평가를 실시(6.2)하며 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그리고, 반기 1회 이상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점검실적을 기록, 관리한다.
㉙ 도급·용역·위탁 등 수급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 이행점검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원 식별(5.2)과 협력업체 자원운용상 중대 리스크의 식별·분석·평가(5.3)를 통해 안전·보건 관리비 기준,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절차'를 마련한다.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자료 등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이행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 관리한다.
㉚㉛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및 개선명령 이행 조치	재해발생시와 개선·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8.1)하고 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㉜㉝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점검, 미이행시 필요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등 안전보건 법령에서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를 식별하여(3.1.2, 3.1.3) 조치했는지(5.1) 반기 1회 이상 점검 또는 보고한(7.4) 실적과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인력·예산 추가배치 등의 조치 실적(8.1)을 기록, 관리한다.
㉞㉟ 유해·위험작업 안전보건 교육 이행점검, 미이행시 필요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요구하는 교육의무를 식별하여(3.1.2~3), 근로자 정기교육·작업 변경시 교육·특별교육 등을 실시했는지(5.1) 반기 1회 이상 점검 또는 보고한(7.4) 실적과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교육이행 지시, 예산확보 등 조치 실적(8.1)을 기록, 관리한다.
㉟ 도급·용역·위탁 등 수급자에 대한 동법 제3조의 조치	동 표준에 따라 기업은 계약 또는 아웃소싱에 따른 활동을 제어해야 하므로(5.1) 도급·용역·위탁 등의 경우 제3자의 종사자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상기 ㉑~㉟의 조치를 한다.

자료: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 기업재난관리표준(행정안전부)

## 결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로 동법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과 학계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은 사전 예방에 치중되어 재해 발생 이후 기업 운영상의 리스크 관리나 피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난(업무중단 사고)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사전 및 사후관리 활동을 모두 지원하는 재해경

2)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 등에게 부여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로 세부내용은 Table 1의 비교란 참조

감활동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산업재해가 기업의 업무중단 또는 재무적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가 있음을 사회적 현상 및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동 법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문서화 요구사항을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와 연계하고, 해당 의무에 대한 조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활용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는 물론 각종 재해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함께 재해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여 조직의 업무연속성 유지와 ESG 경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재해는 사전 예방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에 따른 각종 재난 및 안전 사고 관리체계가 예방중심의 체계로 더욱 진화될 수 있도록 예방계획 수립과 예방기술 발달을 견인할 수 있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Employment and Labor (2020).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2] Employment and Labor (2022). “The withdrawal of suspension of work takes average of 40.5 days...”, Korea’s official e-government website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99723>), accessed (2022. 08.27).
- [3] Employment and Labor (2022). Enforcement Rul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4] Han, S.-J. (2022). A Study on the Expansion and Classification of Risk Types in Corporat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s.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5] Jung, J.-W. (2022). “Legal issues in practice under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 Focusing on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Vol. 46, pp. 519-553.
- [6] Jung, S.-H. (2021).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quality management and 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Journal of the Society of Korea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Vol. 44, No. 2, pp. 124-131.
- [7] Kim, J.-T., Shin, Y.-S., Moon, Y.-M. (2022). “A study on the effect of construction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on the post-management of safety inspection evalu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 18, No. 1, pp. 228-240.
- [8] Kim, S.-J., Kim, W.-C. (2021). “The val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vidence from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Vol. 38, No. 3, pp. 201-238.
- [9] Kim, Y.-K. (2021). “Legal issues and legal policy tasks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 From the perspective of strengthening safety and health measures of enterprises.”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Vol. 18, pp. 111-147.
- [10]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9). KS Q ISO 45001:2018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use.
- [11] Kwon, H. (2021). “Study on legal system of the preventionslaw of industrial accidents for CEO.” Labor Law Forum, Vol. 34, pp. 1-28.
- [12]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1). Enforcement Decre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13]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1).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14]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Deputizing Course of Establishing the Disaster Mitigation Activity Planning I, Korea Disaster Prevention Association, Seoul, Republic of Korea.

- [15]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Note No. 2017-1.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Prevention and Safety Division (2017.07.26).
- [16] Oh, B.-S. (2021). "Contents of the serious disaster penalty act and corporate response - Focused on serious industrial accident." *Industrial Health*, Vol. 400, pp. 42-49.
- [17] Park, S.-C., Kim, M.-R, Cheung, C.-S. (2018). "A study on the effect of ISO-based management system on company's autonomous activities - Focused on the integrated specification applying HLS."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s 2018 Regular Conference and Special Seminar*, Ilsan, pp. 109-110.
- [18] Park, S.-Y. (2019). *Analysis of the Effects of Occupational Accidents on Financial Statements such as Corporate Growth and Profitabilit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2019-yeonguwon-1545, Ulsan, Republic of Korea.
- [19] Song, I.-H., Kim, K.-S., Ryu, J.-M., Kim, C.-S., Park, S.-Y. (2022), "Efficient operation plan for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3, No. 5, pp. 452-459.
- [20] Woo, S.-S. (2022). "A study on the link between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and ISO 45001 of SMEs."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 18, No. 2, pp. 333-342.